건설업체 세무 조사 어떻게 대비하나

김남용
신성회계법인공인회계사 · 세무사

최근 사회 전반적으로 불고 있는 투명화의 영향과 회계 감사인의 부실 감사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로 인하여 건설업분야의고질적인분식회계가많이감소하고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아직까지도건설업은다른업종에비해분식을통한세금탈루와비자금조성등의비리가많이연루되어있는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건설 불황으로 " 건설업에 대한조사유예와징수유예, 납세담보면제등을적극검토하겠다 "는 국세청장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계열의 건설사는 물론중소건설사등많은건설사들이세무조사를받고있는상황이다. 이에세무조사를받고있는건설사뿐만아니라그외의 건설사들도 국세청의 세무 조사에 대한 대처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있다.

일반적인 세무 조사 대처 방안

선량한 경영주나 회계 담당자들이 기업의 경영 관리 면에서 세무관계를소홀히취급함으로써회사의조세부담이과중하게 부과되어자금압박에서오는경영난으로기업의존폐에까지영향을미치는사례를많이볼수있다. 이러한사례는기업의경영주나회계실무자들이고의적으로탈세를사전에기도한경우도 있을것이나, 대부분의경우는조세관계법규의무지혹은경영자의무관심에서오는결과일수있다. 이에경영주나회계실무자들의합법적이고합리적인절세를위한세무대책의기본적인 요소와세무조사에대처하기위한일반적인유의사항및태도에대해몇가지로요약하면다음과같다.

회계처리 절차의 일정한규정 제정

각 기업은 거래의 발생부터 종결 시점까지의 회계 처리 절차 및방법이매결산시마다계속성이유지되어야한다. 특히, 비상장 법인에 있어서는 경영주 또는 임직원들의 자의에 의하여 회계 처리 방법이 수시로 변경되는 관계로 세무 조사시에 정당하게기록된거래사실에대해경리담당실무자가명백한해명을 하지못하는경우가있다. 게다가요구하는관련장부와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함으로써 고의적인 부정 회계 기록이란 인상을받게하고, 이로인하여조사기한연장이나조사확대등을 받는경우가있다. 따라서, 각부서마다통일된회계처리규정을 제정하여집행하도록해야한다. 이로써각 부서의실무자가 교체되어도사무의능률화를기할수있고, 더욱이몇개연도의거래사실에대한관계서류를찾아내어명확한답변을할수있으며, 각부서간의업무파악도용이하게된다.

거증을위한 정확한기록과 정비

결산이 확정되어 이에 따른 결산서의 신고와 당해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한후회사는소관세무관서의경정이나세무조사에 대비하기 위하여 조사 대상 결산 연도뿐만 아니라 전기까지의 관계되는 장부와 증빙 서류를 재정비하여 조사 공무원의 요구가있을때즉시제시할수있도록일목요연하게보관하고있어야한다. 장부와증빙서류가제대로정비되어있지않아조사 공무원의 제시 요구에 즉시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 부정 회계를 은닉하기위한오해를 받을우려가있기때문이다. 세무조사과정에서제시를요구받는관계서류의예를들면다음과같다.

(가) 일반적으로제시를요구하는장부및증빙서류
①총계정원장, ②보조부, ③현금출납부,
④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납품서, 계약서, 지급증, 수표및어음원부철등의증빙서류
⑤원재료및보조재료, 제품및상품의구입, 출고판매에대해각부서에비치기록된노트등의원시기록장과 송장, 입고장, 출고지시서, 제조지시서, 생산일보, 공정별작업일보, 공장공사일지, 예정및실지원가계산서, 재고조사표등기타관계서류

(나) 조사과정에서필요시에따라요구되는관계서류철
①회사설립부터의연혁관계철, ②각급회의관계철, ③이사회또는주주총회관계철, ④회사의각종사무처리규정, ⑤본사, 지사, 거래처간의왕복 문서철, ⑥각 부서간 및출장소, 현장등과의작업 관계철, ⑦비서실 또는기획실의보관문서

적법한 세무조정

회사의 세무 조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대비책이 정확한 세무조정을통한신고납부의무의이행인것은분명하다. 그리고 이를위해경리 담당실무자가「세법」전반에대한 기본적인지식을구비해야한다는사실또한재론의여지가없다. 회계처리 과정에서 법규의 적용 및 해석에 의문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능한 한 결산 마감일 전에 세무관서에 질의하여 서면으로 회답을받아처리해야하며, 신고서를제출한후장부의사후검토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방치하지 말고 세무관서의 질의회답을받아두는것이현명한조치이다. 이러한조치를취하지 아니하고 실무자가 자기 판단으로 처리한 내용이 세무 조사시에 부당한 처리로 지적되어 과중한 세금 부담을 지는 사례를흔히볼수있다.

건설업체 세무 조사시 유의점과 대처 방안

건설업의경우실제국세청의세무조사에서추징당한금액이 일반회사에비하여상당히많은 금액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이는원활한공사계약체결및부실공사에대한무마등을위한 변칙적인 자금 조달 목적의 탈루 관행뿐만 아니라 건설업 회계처리규정의특이성에기인한회계처리의오류에그원인이있다고할수있다. 건설업세무조사시주요지적사례를들면다음과같다.

작업 진행률산정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용역 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 연도)에 의하여 건설 용역의경우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의 건설 등을 제외하고는 작업 진행률에 따라 수익을 계산해야 한다. 그리고이때의작업진행률은기본적으로총공사예정비대비투입된총공사비누적액비율에의해산출하도록되어있다.

특히, 공사원가는진행률의산정및손익산정의기초가되므로 정확한공사원가의집계는건설업의가장중요한사항이다. 그래서공사원가는올바른계정과목으로실행예산원가와대조될수있도록신속하게집계되어야한다. 공사원가가 올바로 집계되지 못하여 공사 원가가 과다 계상되면 진행 기준에 의하여 공사 수익이 과다 계상되어 전체 손익이 크게 왜곡될 수 있다. 따라서, 경리 담당 실무자는 회사의 수익 계상시 원가 보고서의적정성, 원가보고서의승인여부, 예산실적분석, 원가보고서와 총계정 원장의 일치 여부, 외주 계약서와의 일치 여부, 하도급업체의 보증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공사 진행률에 의한 공사수익을산출해야할것이다.

또한, 단기공사계약과장기공사계약을구분하여공사수익을 산출해야 하며, 소규모 공사분 및 일부 공사 대금 미회수 등 의사유로인해공사수입금액계상을누락하는오류를범해서는안될것이다.

원가관련 세금계산서 수취시기 등

상기와같이공사수익은발생공사원가에의한작업진행률에의하여산정되기때문에공사기간을벗어난지출증빙은공사원가에서부인될가능성이높다. 따라서, 경리담당실무자는 준공검사필증에의한완공일자와해당공사의발생원가에대한 증빙과의 대사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과세 당국의 오해를방지하기위하여공사진행과정과지출증빙의투입시기에대한확인이필요하다.

부가가치세 환급등

아파트건설분양시분양가액은대지분과건축비로나누어져 있는데, 이때 대지분에 대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세이나 건축비에 해당되는 부분은 부가가치세 과세분(국민주택 규모 초과분)이기때문에부가가치세신고시이에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아파트분양은시행사가용지를취득한후분양계획을관할지방자치단체에허가신청을하면서시작되며, 허가시분양가액을 대지가액과 건축가액으로 구분하여 신청한다. 따라서, 차후 부가가치세신고는당초허가내용대로대지가액과건축가액의비율을유지한채로신고해야한다.

또한, 건축비 중 국민주택 규모 이하분은 부가가치세 면세이고, 초과분은부가가치세과세이기때문에분양허가서등을확인하여국민주택규모이하의건축비에대한매입부가가치세에 대한환급을신청하는오류를방지해야할것이다.

노무비의 관리

건설업계에서노무비를통하여세금을탈루해온기존관행은 주지의사실이며, 아직도건설업세무조사시노무비에대한조사는반드시이루어지고있다. 따라서, 노무비에대한증빙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하는데 이는 노무비 증빙 관리에 대한 오류발견시세무조사확대등이이루어질수있기때문이다. 따라서, 작업현장에서는현장작업일보와현장공사일지를당일에작성해야하며, 노무비지급대장및취급자확인서를정확히 관리하는등문서관리에중점을두어야한다. 문서관리에소홀하여현장작업일보와현장공사일지를즉시작성하지않았을 경우 우천으로 인하여 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날에도 작업을 실시한것으로기재하는오류등이발생할수있다.